

第105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0月 17日(火) 11時15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11時15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동분서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난히 더 풍성해 보이는 이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의 계절답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보다 많은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조 금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던 사항으로서 이미 지난 9월 4일 제104회 임시회 심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집행부에서 안건 명칭 변경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상정된 안

건입니다.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우리 의원 위상은 물론 지역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 심사 전에 전 의원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기 위해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오늘 회의가 정말 알차고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의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10월 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 2건은 연관된 내용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19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요즘 기온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 걱정이 됩니다.

먼저 조례 제·개정 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8일자로 창신1동장에서 동기능전환기획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高成九 團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李東奎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따라 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기반 구축과 원활한 운영 및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정사항 중 주요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 (안) 제2조제1항의 주민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용어로 타구 입법사례 중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준칙안 대신 '문화복지센터', '동민의 집'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 제2장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안) 제4조의 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과, (안) 제7조와 제10조에서 문화복지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및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내용, (안) 제13조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장 「주민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 제15조, 제16조의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서 주민문화복지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과 (안) 제17조제4항에서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서 하는 구의원의 문화복지센터 참여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5항에서 공무원은 주민문화복지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기존의 관 주도하의 행정기능체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문화복지기능을 확충,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제고와 자원봉사활동 전개 등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6항에서 주민문화복지위원장에 대한 임기와 연임 횟수 등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안) 제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李東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검토한 바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중 동사무소가 문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명칭의 일부를 수정한 사항과 관할지역 구의원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참여 방안,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수강 등에 관한 사용자 징수범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종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조례를 상정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0월 5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위하여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문화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장의 의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문화복지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자,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 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에서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조례의 타구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제정 공포 완료했습니다. 먼저 명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한 구가 7개 구, 주민문화복지센터 또는 주민복지센터로 한 구가 5개 구, 동민의 집으로 명명한 구가 1개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참여방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 또는 상임고문으로 한 구가 8개 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 구가 1개 구, 구청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구가 2개 구, 별도 규정이 없는 구가 2개 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센터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던 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재상정된 사안입니다.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과 아울러 동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생활체육,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주로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명칭을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시설물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씩, 수강료 등은 1인 월 1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하였던 바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와 안 제15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안 제17조제4항에서 관할구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하도록 하였던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金賢植 行政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자치조례 중 일괄 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부 시범동에만 적용되었던 자치법규 부분 개정조항 등을 전체 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자체 사무·인력·기구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조정사항을 자치법규 개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외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 등은 사전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종로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승인된 동기능전환 관련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내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진흥과, 여권과의 순위로 편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사항으로 동장 재위임사무내용 중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경유 및 확인절차로 이루어졌던 시체 매·화장 신고 업무가 현재는 주민이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묘관리사업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동장 재위임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내용은 기존 동사무소 존치 업무내용 중에서 생활안정용자금 대부신청 및 반환시 관할 동장을 경유하는 규정내용을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장 경유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개정내용으로 기존의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체납처분 및 독촉, 가산금고지, 수납 등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과 관련된 규정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종로구세조례 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존의 동사무소 존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동장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0월 5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라 사무, 인력, 기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권한위임조례 등 4개 조례에서 동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조정은 총 624개 사무 중 동 존치업무가 202건으로서 서무, 인사, 경리, 통반 경리 등이 되겠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총 422건으로 기획, 문화공보, 선거, 투표, 병무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조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정 전에는 정원이 총 313명이었고 현원이 271명이었는데 조정 후에는 정원이 171명, 현원이 233명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구청으로 이관될 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정원은 동별로 8명내지 11명을 존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조정 후 정원 외 동별로 3명씩 초과현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1항을 개정하여 행정관리국 내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전자치구를 대상으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 제2호를 개정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시체 매장·화장, 개장을 포함합니다. 그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용자금 대부신청 및 반환시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구청장에게 바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세조례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구세 부과징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2항을 개정하여 구청장 및 동장은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토록 하였으나 이중 동장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먼저 한시기구 설치근거법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3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정원 승인사항은 2000년 7월 7일자로 1개 과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은 5급이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기능전환의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조례의 일괄 개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전면 실시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행정관리국 내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토록 하였던 바 기구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경으로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하는 게 어떨겠습니까? 공무원들 식사시간도 있는데 그것이 낫겠죠?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13時5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제17조제5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무원의 개념은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포함되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제17조제5항에 대해서 지방의원은 이 조항에 공무원으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 다음에 18조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 조례(안)에 지방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고문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18조에 3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신설할 내용은 「위원장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하는 항을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신설했을 때 조례제정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먼저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별도의 상임고문에 대해

서는 현재 본 법에 행정자치부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또한 임무자체가 이러한 문화복지위원회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정부지침에 어긋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7조에 말입니다. 선출직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항을 삽입했는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논리하고는,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추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임고문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역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직위가 주어지면 직위에 대한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6조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자는 얘기인데 협의가 아니고 그것이 무슨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4항의 상임고문 자체는 원래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상임고문 자체를 배제하는 입장에서 전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에서 이 제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각 구의 구의원님, 또 운영위원장님들이 제 방에 와서 사실상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임고문, 구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위상을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이러한 상임고문을 올려서 의원님들을 위해주자 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 관계관하고 협조를 했는데 완전히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때는 각 기관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제17조4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한 것은 상임고문이 각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千相旭委員 지금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고문은 위원회도 분과위원회도 있지 않

습니까? 분과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조에 회의에 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의 3항에다가 꼭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항을 넣어줌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지방의원들이 큰 권위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던 복지위원회가 되었던 간에 위원회를 집행할 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문에 응해주자는 얘기고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이런 뜻으로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조그만 힘을 갖다가 거기서 보태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뜻으로 이것을 명문화해야 되겠고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지 않으면 심의할 경우에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문제가 국장께서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 복지센터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속사항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구를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자치위원회가 존속하면 자치행정과는 존속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2001년 6월 3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사무인력조정계획이 혹시나 이러한 사무조정에서 구에 존치하는 업무라든지 또 이에 관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담당간부한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1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존치사무나 구의 이관사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하는 시점을 잡기 위해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정원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되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사무가 자치위원회로 업무가 시작되면 동 인력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력조정 내역이 나와있는데 조정 전에는 동 정원이 313명이었고 현원이 271명인데 조정 후에는 동 정원이 171명이 되고 현원이 233명이 되는데 정원과 현원이 조정 후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38명의 인력이 정원 T/O에 오버되는 인원이 38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절차상으로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이관 인력 38명에 대해서는 직능 분류별로 해서 세무직에는 세무파트에서 총괄하고 여타는 동별로 초과인원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현재 동의 기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정원이 171명인데 조정 후에 현원이 233명이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거기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62명이 초과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여타 직원의 구조조정도 총 정원제로 해가지고 전체 T/O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고 또한 내년 7월까지 할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단 현 각 업무상의 문제점은 최대한 동별로 구에 담당자를 지정

해서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은 인력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칙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총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동에서 하는 이 업무가 구에 이관되었을 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정업무를 세무관계는 세무파트에 또한 동에 꼭 필요한 분들은 동에서 구 담당제 또한 자치행정과의 동별 담당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의 이관사무 기획, 공보업무라든지 세무, 지가, 환경위생 이런 중요한 이관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걱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치행정과가 그대로 직제가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문제점은 체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를 언급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에도 자치행정과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신설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며 기능은 무엇이고 또 필요한 인력은 급수대로 몇 명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주체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의 구상(안)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구 이관 사무가 총 656건 중에서 구 이관이 422건, 동의 존치가 202건, 폐지가 32건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한 개 과에 4개 담당 2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1개 과에 4개 담당별 23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팀, 자치사업팀, 사회진흥팀, 생활민원지원팀 해서 23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그 자료를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의결하시면 사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10분씩만 제한을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서 다음에 질의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고문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저는 宣相善委員님께서 상임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품격상 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지역의 지식과 덕망 있는 분을 위촉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상임고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문화복지센터의 위원회에서 상임고문으로서 그 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선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전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이란 이런 직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예우를 어떻게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상임고문의 예우가 어떻게 돼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위원회의 일반 위원보다

도 위원회에서 제일 웃어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宣相善委員 어른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고문이, 만약에 위원장이 고문하고 어떤 상의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조례(안)을 보면 역할이 별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정부의 이러한 지방자치센터 종로구의 문화복지 이런 센터에 있어서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정부 지침상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제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조례(안) 제14조1항을 보시면 「동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복지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쪽 보고하는 것은 조직에서 동장은 구청장의 수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은 동장 휘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하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완전히 동장 휘하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보고를 안해도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총괄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동장 휘하에 있다면 위원회가 완전히 동장 손에서 왔다갔다해야 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데 당초 이 법 취지가

○宣相善委員 법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동에서 동장이 저기하면 위원회에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복지센터가 생기는 것인데 위원회가 있는데 동장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버리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장이 다 해버리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그렇지 않지요. 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되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하에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宣相善委員 상하관계를 떠나서도 위원회에서 동장이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군요. 그것은 넘어가고 제15조 설치 제가 다른 구의회 것하고 봤어요. 우리가 좀 삼입할 것도 있고 해서 참고한 거니까, 15조 설치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심의를 자문으로 하면 안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宣相善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하기 위한”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宣相善委員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약간 부드럽잖아요. 심의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심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宣相善委員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님! 질의하십시오. 10분 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 시작하

겠습니까. 17조의3항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촉이 맞습니까? 임명이 맞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님께서 17조3항에 대해서는 위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13개가 제정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위원들을 임명했습니까? 위촉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계에 있는 분들에겐 덕망이 있는 분이나 단체 대표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상임고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고문이라는 뜻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품격상 제일 상위에 있는 어른으로 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볼 때는 고문이라고 하면 어른이나 다름이 없는데 상임위원장이 낫지 않습니까? 상임고문보다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이것은 위원장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품격상 상임고문으로, 당초에 이런 정부의 (안)도 이러한 상임고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상임고문으로 넣은 것입니다.

○**劉燦鍾委員**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심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하고 논의하는 것이 심의고 자문은 남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자문이라고 합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문은 통보에 가깝고 심의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내서 그 결정을 짓는 거죠? 비슷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한 위원회의 멤버

로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거고 자문은 타 기능분야의 권위있는 분들에게 그 내용을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이나 엔지니어링이나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덕망이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묻는 이런 것을 자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죠? 국장님께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만들었습니다.

○**劉燦鍾委員** 원안 통과를 하면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원안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劉燦鍾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제17조 구성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5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취지가 이렇게 정당인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정당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宣相善委員**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정당에 의해서도 관여가 되고 또 동네에서 위원회 속에 서로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다른 분들하고 조직의 이원화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러는데 이런 하나의 해소 방법도 정당인이 아닌 사람을 선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또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을 검토할 수 없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宣相善委員** 검토를 한참 하게 되면 이것을 안 하고 못하니까 그렇지 통과를 못하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왜 그러냐면 정당관계는 저희들이 요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배제를 한다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대통령도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宣相善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에 제18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총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통할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총괄한다고 하는데 통할한다는 말을 접해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전을 내가 안 가져와서 못보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宣相善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총괄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법적 용어로는 통할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전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통할이라는 것은 '모두 거느려서 관할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총괄은

○**委員長 李東奎** 통할을 물은 것이 아니라 총괄을 물은 겁니다. 통할로 답변을 하셨는데 총괄을 물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이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통할, 우리가 평상시에 총괄한다고 하는데 통할은 접해보지 못했어요. 제18조에 직무를 통할한다고 했는데 직무를 총 관장한다는 얘기인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죄송합니다. 그대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데로 모아서 몽침 또 의견을 뭐 하다, 어떤 의견을 늘어 많은 개념을 포괄한다' 이런 뜻입니다. 총괄이

○**宣相善委員** 총괄이 더 낫겠네요. 그러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구태여 이런 자구까지는 현재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로 하면 되는데 통할보다는 총괄이 나은 것이 아니냐, 총괄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바뀌도 되겠네요. 2항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유고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나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유고시를 빼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유고시라고 하면 총칭이다 들어갑니다.

○**宣相善委員** 왜 이걸 이렇게 보냐면 유고시라고 하면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여하튼 조그마한 일이라도 태만하거나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용서를 하십시오. 지금 전부 국어사전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유고는 '사가 있음' 이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0조에 해촉에 대해서 4항을 보면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宣相善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宣相善委員** 생각은 다 되죠. 되는데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宜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은 언어를 말씀드리느라고 사전을 찾아 하느라고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한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조정에 보면 조정 후에는 동사무소에 8명에서 11명으로 3명씩 더 초과현원을 유지할 하겠다고 했는데 이 3명씩을 19개 동에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3명씩을 배치할 겁니까? 지금처럼 인원이 13명이 되는 동도 있고 10명이 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 외의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구조조정 연후에 동별 실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동별 실정이 똑같아요. 옛날에는 업무량이 많고 적었지만 이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등하게 11명이면 11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공히 균등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의 인력이 23명 정도라고 했는데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6명. 그러면 만약에 17명 정도가 더 보충이 되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계획으로는 보충할 계획입니다.

○洪起瑞委員 현재까지 구 이관 인력이 38명인데 38명 가운데에서 17명을 자치행정과로 배속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어느 과로 배속을 할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업무는 자치행정팀이라고 보고드린 것하고 사회진흥 업무가 기존의 우리 총무과의 동정계 업무, 문화진흥과 사회진흥계 업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겠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 나머지 인력은 어디다 보충할 거냐는 얘가지, 그 38명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확정된 연후에 전반적인 조직을 검토해서 관리를 하고 특히 세무 파트면 세무 징수관계의 별도 태스크포스(taskforce)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타 동별로 적정인력을 배치하면 큰 인력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모든 민원이 422건이 구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을 예를 들면 기동인력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라도 동을 순회를 하면서 민원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동별로 구에 문서를 하고 하는 것을 한 분 더, 민원을 대행을 한다든지 신속히 처리해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명륜3가동하고 송인1동이 시범동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목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함흥차사예요. 이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우리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토목과로 전화를 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뒷골목에 어디 파손 하나 생기더라도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다 올렸는데 지금은 바로 구청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동행정에서는 서무, 인사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서수발을 할 인력을 하나 둔다고 하더라도 영향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기동순찰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가서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을 답사할 수 있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지원팀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洪起瑞委員**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제13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3조에 수당에 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제1항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자입니까?

○**洞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高成九** 예, 추진단장

이 劉燦鍾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취미교실과 문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보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강사 밑에 또 따로 있어요? 보조기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문화복지위원회에서 쉽게 보면 사용료도 받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洞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高成九** 예, 劉燦鍾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은 저희 구에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또 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요?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그러면 강사가 됩니까?

○**洞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高成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적으로 실비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劉燦鍾委員**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강사료만 지급하면 되지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는 수당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중복되지 않아요? 강사면 강사 이렇게 해야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劉燦鍾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고 또한 자원봉사자도 법적으로 실비보상을 하도록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범주에 속하느냐는 얘데요. 쉽게 보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강사만 있으면 되지 어디까지가 자원봉사자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봉사하는 팀별로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서 강사는 라이선스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주로 되겠고 그것은 한 분 정도 되겠고 여타 자원봉사자는 인원이 많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요양하고 관리하는 분들 같으면 그런 분들은 솔선해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강사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만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劉燦鍾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님!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제17조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 대목은 왜 넣었어요? 여성위원이 과반수 되는 것으로 해서 넣었나요? 여성위원들한테 아부성 표현인지 말씀해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위원들이

○金正大委員 간단하게 여성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하려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성위원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아니, '특히'. '특히'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초안을 입안을

했다니까, 특히 여성위원이라고 하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여성위원들을 배제할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골고루 하라고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특히 여성위원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라고 해놨거든요. 나중에 여성분들이 데모 일어나시면 책임지실래요? 문구가 그래요. 그리고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 한다」 뒷맛이 개름칙해요.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위원장이다 뭐다 다 배제가 되었는데 행자부 지침을 억지로 해놓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8개구가 당연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이렇게 8개구가 당연직 또는 상임고문으로 조사되었어요. 그것을 모르세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그런데 여기에 다 고문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삽입해 줄 수 없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正大委員 그래서 당연직으로 다른 구가 8개구가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구의원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마치못해서 흘러가는 물소리처럼 그런 맛이 안 나요? 국장님이 직접 썼다고 하시니까 예우 차원이라고 하면 밥상을 그냥 던지는 것하고 각듯이 갖다놓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법에는 법의 설립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안)하고 상당히 수차례 협의를 해서 현재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위상 제고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말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개정 이유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를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이거든요. 육법전서에 나와있는 큰 법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기 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구청장도 민선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민선인데 동장이 출신의원의 동네에 와서 살림살이를 전담하는데 간섭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그 법이 지방자치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우라는 말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검증받은 의원인데 당연직이라는 말을 왜 빼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라고 들어가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어쨌든 8개 구가 당연직 고문 또는 상임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구청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구도 성동과 도봉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의원들의 위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당연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삽입을 할 수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正大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宣相善委員께서 질의를 했는데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고 했으면 당연직 상임고문에 대한 어떤 어필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죠?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방위협의회다 무슨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하나의 직능단체 현재 지금도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있었던 그런 어떠한 의원의 직능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검증받은 구의원들이 여기에 배제된다지만 위원장에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임고문에게도 어떤 역할이 주민들의 많은 뜻을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분 동장님들은 사실 1년 있으면 6개월이라도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구청장 명에 의해서 가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 와버려요. 그런데 동장이 전부 위촉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정서를 잘 알고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넣어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법으로 안된다고 자꾸 하시지 말고 좀 말로만 품격이라고 하시지 말고 동장이 위촉할 때 그 지역 구의원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요약해서 넣을 수가 없을까요?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기 될 같아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이야 1,2년이면 왔다갔다하는 분들한테 공직자인데 그 지역에서 선출된 검증된 구의원들을 제쳐놓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꾸 지침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법안이 아닙니까?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지역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 법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입장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법의 근본취지가 동장 산하에 이러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이러한 복지센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이 문서로 또 그분들은 자문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취지에 어긋난다는 소리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동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면 그 동장한테 잘 보이려고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평소에 소외가 되었던 분들이랄까 잘 설치는 분들이랄까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잘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임명이나 위촉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그 지역 구의원이 주민의 전체 저걸로 해서 선출 받은 분이 그것을 관여한다든가 물론 큰 관여는 못하겠지만 자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만의 위상이 아니고 당연직이라고 당연히 넣어주시고,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 '당연직'을 넣어주시고 6항까지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다가 상임고문의 역할을 짧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주세요. 허수아비죠. 당연히 상임고문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부적격한데도 동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도 자기한테 잘한다고 해서 위촉을 해버리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할 동장이 구의회 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재의요구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때는 재의가 요구되어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상임위원의 품격상 위상을 제고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당연히 상임고문은 어용에 불과하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상임고문은 혹시 이러한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委員長 李東奎 金正大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金正大 副議長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7조4항에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서 한다」 그 내용이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당연직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런데 왜 말을 어렵게 해요? 그냥 당연직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 제17조4항에 못이 박혀 있어요.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관할구역 구의원으로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이에요. 말 자체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법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어렵게 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좋습니다.

○**劉燦鍾委員** 아까 모법 준칙에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

된 구의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이끌어야 하고 또 주민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공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보면 1개 과가 늘어나죠?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이 5개 과에서 6개 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시기구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정부계획은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만일 2001년 6월 30일날 그 과가 없으면 그 인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담당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침이 하달되리라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때 가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요. 운영 중에 이러한 존치나 폐지의 여부

○**宣相善委員**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를?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용서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알바본 결과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도 다소 물의가 있겠지만 그대로 존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宣相善委員** 덧붙여서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무원들이 휴가를 춘계, 하계, 추계 이렇게 가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宣相善委員** 또 MT도 가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MT는 어떤 이유로 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타 구청은 전부 체련대회를 했는데 종로구는 체련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보내주자는 청장님의 결심이 있어서 이러한 체련대회도 갖게 되고 MT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타구는 이미

○**宣相善委員** 지금 추계 휴가 중이죠? 직원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휴가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인력이 부족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공무원들 휴가 보내고 MT 보내고 체력단련하고 대직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한번에 전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잘라서 보내는 것이니까

○**宣相善委員** 잘라서 가는데 왜 휴가기간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가면 대직할 인원도 없고 내방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느냐 이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다소 물의가 있지만

○**宣相善委員** 이것을 짜임새 있게 잘 짜서 중간 중간에 MT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동사정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만 죽어요. 죽어. 이것을 심사숙고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없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3分 會議中止)

(15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와 21조에 각각 1개항씩 신설하고자 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18조에는 2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 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그리고 제21조에도 2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3항을 신설하여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千相旭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千相旭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18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총괄」로 하고, 제20조제1항 4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기타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회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경우」로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宣相善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千相旭委員과 宣相善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時38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李東奎 崔康洵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洞機能轉換推進企劃團長 高成九